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4 월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명 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법률 제838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資本總額(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자본총액을”을 각각 “자본총액의 2배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증

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100분의 30으로 하며,”를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을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를 “이 경우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산총액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2. 순자산액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
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
사

제12조제1항제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
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
외한다.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공정
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
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
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
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
래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자본총액을”을 “자본총액의 2배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有價證券”을 “유가증권·상품·용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6항”으로 한다.

法律 第7315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0조제1항·제2항·제8항, 제17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9

제3조(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2007년 지정일 현재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이 법 공포일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

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의 완화(법 제8조의2)

(1)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본총액의 2배까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을 각각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완화함.

(2)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주가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행위제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완화(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 법 제10조제8항 신설)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의 변화 등 시장여건에 맞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

서 10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의 기한 내에서 한도 초과출자를 인정하던 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한도초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 보완(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5 신설, 법 제50조 제5항 및 부칙 제2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

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 바, 그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행위의 유형에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채무보증·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5) 공시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공개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국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

조약

2006년 12월 19일 제5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22일 서울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합중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07년 4월 2일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최종 통보한 날인 2007년 4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4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조약 제1844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